

#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8,250,252	18,247,508
일반회계	538,702,442	16,161,073
특별회계	69,547,810	2,086,434
공기업특별회계	58,665,756	1,759,9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998,170	1,079,9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667,586	680,028
기타특별회계	10,882,054	326,4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77,520	77,3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46,182	46,385
도시재생특별회계	1,474,981	44,249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429	1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77,942	158,3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45,126천원(일반예비비 3,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45,12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